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38
----------	------

2023년 12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6일 김영옥 의원(찬성 21인)
2.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3. 상정일자 : 제321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영옥 의원)

1. 제안이유

-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 장려를 위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90세 이상 어르신 등 나이 드신 부모를 봉양하는 가족에 대한 표창을 통해 부양가족을 격려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효행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행에 대한 표창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하고, 매년 표창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100세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대상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3.10.26.~10.30.(의견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효행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을 표창으로 변경하여 표창 대상을 구체화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 사항 검토

- 본 개정(안)은 안 제5조(포상)을 안 제5조(표창)으로 변경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한 표창대상자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이를 위해 시장은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장수노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6조를 신설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포상) <u>시장은 효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효행문화의 확산에 뛰어난 이바지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u>	제5조(표창) ① <u>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 할 수 있다.</u> 1. <u>효행우수자 등</u> 2. <u>9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u>

	<u>하고 있는 자</u> 3. <u>효행문화의 확산·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u>
<u>〈신 설〉</u>	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u>
<u>〈신 설〉</u>	<u>제6조(장수노인 지원) ① 시장은 매년 10월 경로의 달에 경로효친 사상 확대를 위해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 시민패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인 장수노인으로 한다.</u>
<u>제6조·제7조 (생 략)</u>	<u>제7조·제8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u>

- 가. 포상을 표창으로 변경하여 효행에 대한 표창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년 표창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5조는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포상을 표창으로 변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1) 표창장의 수여대상 제3항에서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

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해당하기에 관련하여 표창에 대한 대상자 기준과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표창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음. 이에 효 문화를 장려하고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을 표창으로 바꾸어 효행에 대한 표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90세 이상 부모 등’ 을 부양하고 있는 자를 규정함에 있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부모 등”은 민법 제 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현 조례에서 ‘90세 이상 부모 등’으로 명시함에 있어 관련 대상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는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과 효행사상 도모를 위하여 효행자, 장한아버이, 효행 실천 기관을 포상하고 있음.
- 2023년에는 효행자, 장한아버이, 효행 실천 기관 등 총34명의 어버이날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하였으며 100세이상 어르

1)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신을 모시는 부양가족 31명에게 표창한 바 있어 효행문화의 확산·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한 표창을 명시하는 것은 효행문화의 확산 및 노인복지의 증진에 대한 의미로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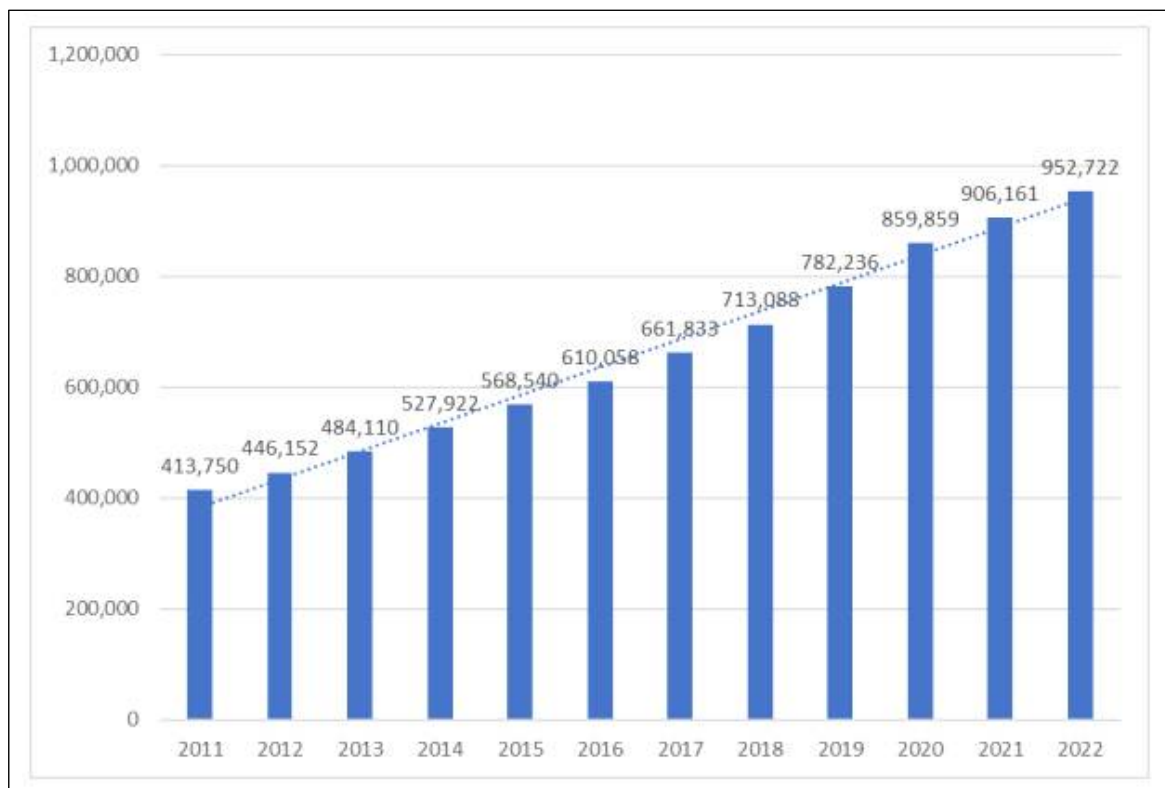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부모 부양과 관련한 노인의 태도를 살펴본 바, 노인의 12.8%는 자녀와 동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거 시 선호하는 자녀는 장남이 32.1%로 가장 높고, 형편이 되는 자녀 29.9%, 마음이 맞는 자녀 23.5%, 아들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나 효행우수자 및 9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은 효행장려와 부양가족의 격려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개정안 제5조(표창) 제1항은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한 표창대상자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항에는 시장의 책무로 매년마다 표창계획을 수립·시행도록 한 조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나. 100세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6조(장수노인 지원) 제1항은 시장은 매년 10월 경로의 달에 경로효친사상 확대를 위해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 시민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항은 장수노인의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기준으로 통계청의 ‘생명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6²⁾세이며 의학의 발달, 영양 상태의 개선 등으로 인해 기대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기대수명이상으로 장수하는 사람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90세 이상 노인 인구의 변화를 보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인구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인구에서 9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0.22%에서 2022년 0.45%로 0.23%p가 늘어났음.

〈연도별 8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



2) 성별로 보면 남성의 기대수명은 80.6세이고 여성은 86.6세이다.

- 장수노인에 대한 규정에 있어 타 시도 및 자치구 조례 등에서 명시한 장수노인의 연령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기준되는 연령이 상이하나 장수노인의 지원 기준을 100세로 보는 것은 이견을 없을 것으로 사료됨
- 2023년 12월기준 서울시 100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1,165명으로 나타남.

〈표1〉 자치구별 100세 노인현황

(기준:2022년, 단위:명)

자치구	100세이상	자치구	100세이상	자치구	100세이상
총 계	1,165명	강 북 구	38	금 천 구	28
중 로	26	도 봉 구	45	영 등 포 구	38
중 구	22	노 원 구	74	동 작 구	48
용 산 구	37	은 평 구	43	관 악 구	49
성 동 구	38	서 대 문 구	51	서 초 구	47
광 진 구	40	마 포 구	47	강 남 구	73
동 대 문 구	54	양 천 구	48	송 파 구	75
중 랑 구	40	강 서 구	69	강 동 구	66
성 북 구	43	구 로 구	33	-	-

- 일부 자치구에서는 노인들의 장수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장수수당 또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조례에 따라 일정 연령기준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있음.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며, 이중 12개 자치구에서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장수

축하물품 지원 등을 시행중에 있음.

- 5개 자치구에서 만90~10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장수축하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7개 자치구에서 효행장려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세 장수어르신을 위한 지원사항이 없고 개정안을 통해 장수어르신에게 시민패 등을 증정하고자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³⁾에도 위배되지 않아 관련 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3 집행부서 의견

- 집행부서인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이견 없음

4 종합 검토 의견

- 최근 사회·경제적 생활행태 및 가족구조가 변화되면서 부모

3)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과약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 또는 상설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의 경우 임시사무소 등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 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해지고 전통적인 경로사상이 사라지고 있어 효행문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므로, 이의 일환으로 효행자 등에 대한 표창 및 100세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붙임1

서울시 자치구 장수 어르신 지원조례 현황

○ 서울시 자치구 입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자	주요 내용
1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2012. 6. 20.	- 효행장려금: 100세 이상 부양가족 연 20만원
2	광진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08. 7. 16.	- 장수축하금: 90세 이상 연 30만원
3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20. 9. 18.	- 장수축하금: 100세 이상 100만원
4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11. 12. 29.	- 장수축하금: 90세 이상 10만원, 100세 이상 100만원
5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1. 7.	- 효행장려금: 100세 이상 부양가족 연 20만원
6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2012. 11. 23.	- 장수축하금: 100세 이상 30만원 - 장수축하물품: 100세 이상 20만원 상당 물품
7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	2013. 1. 1.	- 효행장려금: 90세 이상 포함 3세 대이상 가정 연 20만원
8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9. 11. 10.	- 효도수당: 100세 이상 부모 부양 자 연 20만원
9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2012. 5. 17.	- 100세 이상 부모 부양자 연 50만 원 이내
10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2021. 1. 1.	- 장수축하금: 100세 이상 100만원
11	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12. 20.	- 효행장려금: 100세 이상 부양자 연 20만원
12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 12. 31.	- 효행장려금: 75세 이상 포함 3세 대이상 가정 연 20만원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市와 25개 자치구 모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며, 이중 사회보장적 금전(효행장려금) 지급을 규정한 자치구가 7개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38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 김영옥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길영, 김원중,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혜영, 남궁역,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서호연, 신동원,
유만희, 이병운,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최윤희
의원(21명)

1. 제안이유

-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 장려를 위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90세 이상 어르신 등 나이 드신 부모를 봉양하는 가족 등을 표창하여 부양가족을 격려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효행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효행에 대한 표창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하고, 매년 표창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100세 장수노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을 “포상”에서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1. 효행우수자 등
2. 9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
3. 효행 문화의 확산·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장수노인 지원) ① 시장은 매년 10월 경로의 달에 경로효친사상 확대를 위해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 시민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인 장수노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포상) 시장은 효 의식을 북돋 우기 위하여 효행문화의 확산에 뛰어난 이바지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5조(표창) ① 시장은 효행을 장려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1. <u>효행우수자 등</u> 2. <u>9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u> 3. <u>효행 문화의 확산·노인복지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u>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창계획 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장수노인 지원) ① 시장은 매 년 10월 경로의 달에 경로효친사 상 확대를 위해 장수노인에게 예 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 시민패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 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100세인 장수노인으로 한다.
제6조·제7조 (생 략)	제7조·제8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 와 같음)

문 서 번 호

2023101300000036

비 대 상 사 유 서

요 청 인 : 김영옥 의원

담 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손제승 주무관

접 수 일 : 2023.10.13.

회 신 일 : 2023.10.18.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목 차

1. 판단 근거
2.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표창), 제6조(장수노인 지원)을 변경·신설한 개정안으로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추진 사업(불임 참조)이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

[붙임1]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 사업목적

- 어르신들이 봉사 활동을 통하여 사회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어르신들에게 체육·여가활동, 견학,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 지원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3년 예산내역		
사무관리비	○ 노인의날 기념행사 등 5,000,000원	=	5,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업무추진 1,800,000원	=	1,800
민간경상사업보조	○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대 활동지원 1,386,000,000원	=	1,386,000
	○ 어르신생애체험센터 운영 32,401,000원	=	32,401
	○ 어르신 생활정보 매체 제공 200,000,000원	=	200,000
	○ 어르신지도자 육성 지원 110,500,000원	=	110,5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 서울시연합회 인건비 429,432,000원	=	429,432
	○ 서울시연합회 운영비 97,920,000원	=	97,920
민간행사사업보조	○ 어르신 건강대축제 지원 315,000,000원	=	315,000
	○ 어버이날, 노인의날 기념행사 등 100,000,000원	=	100,000
	○ 10월 경로효친 행사지원 27,000,000원	=	27,000
	○ 어르신 지도자 선진지 견학 200,000,000원	=	200,000

자료 : 2023년 서울시 복지정책실 사업설명서

Ⅱ

표창계획

- 표 창 일 : 2023. 5. 2.(화) 예정
- 수여방법 :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에서 시장 수여

❖ 제51회 어버이날 행사 개요(안)

- 일 시 : 2023.5.2.(화), 10:00 ~ 12:00
- 장 소 : 장충체육관
- 주최 / 주관 : (사)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
- 참 석 대 상 : 시장, 시의회 의장, 서울시 교육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등 300명
- 주 요 내 용
 - › 제51회 어버이날 기념식(식전 공연, 감사영상 및 어버이 은혜 제창)
 - › 효행 유공자 및 단체 표창(시장, 시의회의장, 연합회장상)

※ 100세 이상의 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는 (손)자녀 효행 장려 표창 시상은 5월 중 별도 행사로 수여 예정

소요 예산

- 표창장 제작비용 : 704천원
 - 표창장 세트(표창장, 커버) : 704천원(8천원 × 88개)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